

#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 14 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맥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 363 조와 정관 제 22 조에 의거 제 14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9 년 03 월 28 일(목요일) 오전 09 시 00 분

2. 장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별말로 66, 12 층 A-F 회의실(평촌역 하이필드)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 1 호 의안 : 제 14 기(2018.01.01~2018.12.31) 개별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3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 명)

제 4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5 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 6 호 의안 : 임원 퇴직금 규정 변경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 542 조의 4 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할 수 있습니다.

2019 년 03 월 13 일

지니언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동 범 (직인생략)

**제 2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안)**

현 행	변 경	비 고
<p>제 2 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4.(생략) 5.위 각항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p>	<p>제 2 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4.(현행과 동일) 5. <u>부동산 임대업</u> 6. 위 각항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p>	<p>사업목적 추가</p>
<p>제 8 조(주권의 종류) ①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②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 종으로 한다.</p>	<p>제 8 조(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u>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u>」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u>주식</u>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p>	<p>전자증권법 시행 반영_주권 전자등록의무화</p>
<p>제 15 조(명의개서대리인) ①,② (생략) ③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u>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u>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④ (생략)</p>	<p>제 15 조(명의개서대리인) ①,② (현행과 동일)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u>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u>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현행과 동일)</p>	<p>전자증권법 시행 반영_주식사무처 리 변경내용 반영</p>
<p>제 16 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인감또는 서명 등 신고) ①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 15 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 1 항 및 제 2 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p>	<p>제 16 조 (삭 제)</p>	<p>전자증권법 시행 반영_전자등록에 따라 명의개서대리인에 게 별도 신고 필요 없음.</p>

현행	변경	비고
<p>제 17 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회사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 월 31 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생략)            ③회사는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 월을 경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 월 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 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제 17 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회사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 월 7 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현행과 동일)            ③회사는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 개월을 경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 개월 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 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명의개서정지기간 수정 및 자구수정</p>
<p>제 19 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5 조, 제 16 조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p>	<p>제 19 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5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p>	<p>제 16 조 삭제에 따른 문구 정비</p>
<p>제 20 조(소집시기)            ① 생략            ②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 년도 종료 후 3 월 이내에,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p>	<p>제 20 조(소집시기)            ① (현행과 동일)            ②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p>	<p>자구수정</p>
<p>제 58 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p>	<p>제 58 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p>	<p>법을 명칭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0 조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정권한의 개정 내용 반영</p>
<p>-</p>	<p>부칙            이 정관은 2019 년 03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8 조, 제 15 조, 제 16 조 및 제 19 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p>	<p>-</p>

**제 3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안) 사내이사 1 명**

성 명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3 년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정순녀	-산업활부금융(주) -어울림정보기술(주) -보스톤창업투자(주) -(현), 지니언스(주) 경영지원본부장	이사회	-	해당없음

**제 4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구분	전기	당기
이사의 수	5	6
보수총액	1,200 백만원	1,200 백만원

**제 5 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구분	전기	당기
감사의 수	1	1
보수총액	200 백만원	200 백만원

## 제 6 호 의 안 : 임원 퇴직금 규정 변경의 건

현 행	변 경	비 고
<p>제 2 조(적용대상)</p> <p>① 본 규정은 본 법인의 이사 이상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임원이라 함은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에 한한다.</p> <p>② 임원에 준하다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p>	<p>제 2 조(적용대상)</p> <p>① <u>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은 등기되어 있는 사내이사로서 상근임원에 한한다.</u></p> <p>② <u>사외이사와 감사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u></p>	<p>지급대상을 등기된 사내이사로 한정함.</p>
<p>제 4 조(지급기준)</p> <p>①~② 생략</p> <p>③ 지급률은 다음과 같으며 임원의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gt;대표이사과 전무 및 상무이사로 구분하여 근속기간별 차등 지급</p>	<p>제 4 조(지급기준)</p> <p>①~② (현행과 동일)</p> <p>③ 지급률은 다음과 같으며 임원의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u>=&gt;대표이사과 사내이사(대표이사외)로 구분하여 근속기간별 차등 지급</u></p>	<p>2 조 변경에 따른 수정</p>